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질의 및 회신

이용권 /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실장

1. 콘크리트 못을 이용하여 라인마크를 도로 등에 설치할 수 있는지?

Q 핀이 없는 라인마크 몸체에 직경 4mm인 구멍을 3개만 들고, 이 구멍으로 콘크리트 못을 이용하여 라인마크를 도로 등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A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라인마크는 길이가 140mm이고 직경이 20mm인 규격의 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사에서 질의하신 핀이 없는 몸체에 직경 4mm 콘크리트 못 3개로 구성된 라인마크는 동 규정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공동주택 복도에 외부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도록 가스보일러의 배기통 또는 급·배기통을 설치할 경우 최대설치길이를 가스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Q 가스보일러의 배기통 또는 급·배기통을 공동주택 복도를 통하여 외부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도록 설치할 경우 최대설치길이를 가스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A 가스보일러의 배기통 또는 급·배기통의 최대설치길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보일러 설치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

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가스보일러 제조자의 시공지침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가스보일러를 새 보일러(FE방식 또는 FF방식)로 교체할 경우 공동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독배기통 방식으로만 설치하여야 하는지?

Q '95년도에 설치하여 공동배기방식으로 사용하던 가스보일러를 새 보일러(FE방식 또는 FF방식)로 교체할 경우 공동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독배기통 방식으로만 설치하여야 하는지?

A 현재 사용하는 공동배기구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3조 제2호다목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스보일러를 공동배기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스보일러가 2중 급·배기통을 설치하는 강제급·배기식(FE)인 경우에는 연소용 공기를 급기하고 연소 후 가스를 배기하는 곳이 충분히 개방된 옥외이어야 하는 특성상 공동배기방식으로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4.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2대를 스테인레스 2중관 구조의 연도에 공동으로 연결·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Q 강제배기식(FE) 가스보일러 2대(가스소비량 15만kcal/h 1대, 5만kcal/h 1대)를 스테인레스 2중관 구조의 연도에

공동으로 연결·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설치방법이 공동배기 방식인지 여부

A 반밀폐식 강제배기식(FE) 가스보일러 2대를 하나의 배기통에 연결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3조(반밀폐식 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 제2호 다목의 규정(공동배기 방식)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강제 배기식 보일러는 복합배기통 방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강제급·배기식 가스보일러의 급·배기통을 아파트 외벽에 설치할 때 돌출물이 있는 경우 및 개구부가 있는 경우 설치기준

Q 강제급·배기식(FE) 가스보일러의 급·배기통을 아파트의 외벽에 설치할 때 급·배기통 좌우에 돌출물이 있는 경우와 주위에 창문 등 개구부가 있는 경우의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A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4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급·배기통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충분히 벽외부로 나오도록 설치하되 수평이 되게 하여야 하며,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 간의 거리가 1,500mm 미만인 곳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급·배기통 톱 개구부로부터 60c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어야 하며, 급·배기통의 설치길이는 동 고시 제4-2-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따르면 될 것이다. 아울러 질의서에 첨부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아파트의 급·배기통 설치에 대한 검토 결과가 아니라 아파트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용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이르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검토 결과이다.

6. 공동주택의 중정부분에 강제급·배기식 가스

보일러의 급·배기통 설치여부

Q 사각형 구조로 된 공동주택의 중정부분(상부 개방)으로 강제급·배기식(FE) 가스보일러의 급·배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중정부분의 바닥은 주차장(차량 18대 주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A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3호가목 및 동 조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급·배기통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공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한 중정부분(가로×세로×높이 : 31.2m×17.5m×43.80m)이 비록 상부가 개방되고 하부에 보행자 및 주차 통로를 설치하여 환기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4면이 약 44m 높이의 공동주택의 벽에 의해 막혀 있으므로 이 곳을 총 154대(11대/층×14개층)의 강제급·배기식(FE)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를 배출하기에 충분히 개방된 옥외공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7. 강제급·배기식 가스보일러의 급·배기통 설치 시 급기통은 Dry Area(통풍실)에 배기통은 실외에 설치 가능 여부

Q 강제급·배기식(FE) 가스보일러의 급·배기통을 설치할 때 급·배기통을 분리하거나 배기통의 길이를 길게 하여 급기통은 Dry Area(통풍실)에 배기통은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4조 제3호가목 및 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급·배기식(FE) 가스보일러의 급·배기통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충분히 벽외부로 나오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Dry Area(통풍실)의 경우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설치할 수 없다.

8. 임대아파트 관리동에 부속되어 있는 육아보

육시설, 노인정과 같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주체

Q 임대아파트 관리동에 부속되어 있는 육아보육시설, 노인정과 같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주체는 누구인가?

A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4-2조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 예정량을 건축물의 소유자별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의 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9. 분양된 집합건축물의 경우 소유주가 1인이라도 각 호별로 월 사용예정량 산정이 타당한지?

Q 분양된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1인이라도 각 호별로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A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월 사용 예정량을 산정 함에 있어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을 구분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월 사용 예정량을 산정할 때 가스소비량의 합계는 소유주가 1인인 단위건물의 경우에는 그 단위건물 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10. 공동주택 건립 경우 정압기 설치부지는 누가 제공하여야 하는가?

Q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 정압기 설치부지는 누가 제공하여야 하는지와 관련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A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정압기 설치부지를 누가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설치부지를 누가 제공할지의 여부는 공동주택 건설사와 도시가스사업자 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정압기는 가스를 수송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압력으로 조정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가스설비임을 알려드린다.

11. 공동주택의 사용자공급관을 통하여 다른 가스사용자에게 가스 공급 가능 여부

Q 공동주택의 사용자공급관을 통하여 다른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가스사용자의 시설을 통하여 다른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경우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비용부담과 안전관리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다만, 부득이 공급관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용부담과 안전관리책임 한계를 사용자 상호간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한 후 이를 행정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12. 아파트 입상배관에 도난 방지용 방법덮개 설치 가능 여부

Q 아파트 입상배관에 도난 방지용 방법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방법덮개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방법덮개의 재료가 금속인 경우에는 배관과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등 방법덮개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에 악영향이 미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